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62
----------	-------

발의연월일 : 2026. 2. 4.

발 의 자 : 이해식 · 최혁진 · 양부남
김영진 · 김교홍 · 홍기원
한민수 · 박정현 · 김원이
위성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신설된 조항임.

그런데 그 법령의 “하위 법령”이 “행정규칙”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실무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령의 하위 법령이 훈령,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 등을 훈령, 예규, 고시 등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8조제2항).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하위 법령”을 “하위 법령(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조례) ① (생 략)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u>하위</u> <u>법령</u> 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 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8조(조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하위</u> <u>법령(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앙</u> <u>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u> <u>예규 및 고시 등을 말한다)</u> --- ----- -----.